Deloitte.

글로벌 최저한세 주제

제3회: 제107/2023/QH15호 결의안에 대한 세부 지침 시행령 초안

2024년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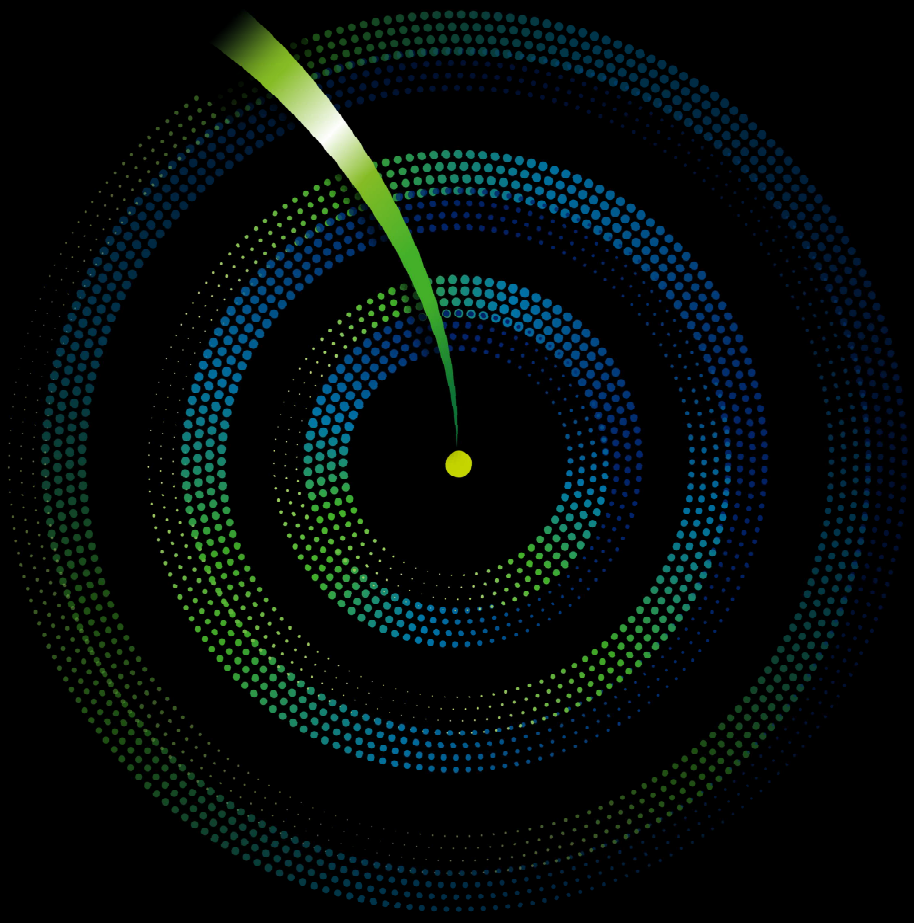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2024년 11월 12일, 재정부는 제107/2023/QH15호 결의안("결의안 107")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해당 결의안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CIT") 적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시행령 초안에는 국내 적격 소재국 추가세액("QDMTT") 및 소득 산입 규칙("IIR")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 다.아래는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Deloitte의 상세 업데이트다.

소개 및 개요

- 시행령 초안은 주요 내용, 부록 I (용어 정의), 부록 II (추가 세액 계산 요소) 및 신고 양식 표준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i) 일반 규정, (ii) 구체적 규정, 및 (iii) 시행 조항. 초안의 **제II부**는 QDMTT 계산 규정을 다루는 제1장과 IIR에 관한 규정을 다루는 제2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초안은 **QDMTT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IIR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에 대한 법규정과 다르다.

- QDMTT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의 모델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OECD의 해설 및 행정 지침**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및 계산 조정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oBE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IIR 규정 역시 GloBE와 호환되며, QDMTT를 참조하고 있다.

- 만약 베트남의 QDMTT가 **QDMTT Safe Harbour 요건**(OECD/IF가 동료 평가 및 검토를 거쳐 발표 예정)을 충족한다면, 다국적 기업들은 **최종 모회사(UPE)** 차원에서 추가 세액 계산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부담과 준수 비용이 감소될 것이다.

- 세무 관리 측면에서는 QDMTT 및 IIR에 따른 top-up tax가 기존 법인세(CIT)와 별도로 **새로운 세무 의무**로 설정되며, 등록, 신고, 세액 납부, 세무 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회계 기준과 국제 조세 관행**(예: 중간 단위, 이중 성격 회사, 투자 단위 등)에 기반하여 매우 복잡하다. 또한, 몇 가지 사항(예: 회계 기준 차이 7,500만 EUR 이상에 대한 조정)은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산 및 신고를 위해 기술적 요소와 데이터를 정확하고 충분히 수집하는 방법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 더불어, 시행령은 **전환 기간 동안의 책임 감소 메커니즘 적용 메커니즘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9월 발행된 GMT 주제 제1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해 사전에 연구, 평가 및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Deloitte는 다음과 같은 준수 로드맵을 권장한다.

1 적용 범위 확인

- 매출 기준에 따라 해당 **그룹이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 및 확인.
- 실효 세율 및 top-up tax 계산을 위해 **베트남 내 구성 기업과 기타 관련 대상**을 확인

2 재무 및 회계 데이터 준비

- 실효세율 및 **top-up tax**를 추정하여 재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GMT가 구성 기업 및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회계적으로 충당금을 설정하고**, 필요 시 재무제표("FS")에 관련 정보를 기재.

3 최적화 계획 수립

-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적용 대상 제외 가능성, 계산 옵션, 지원 정책, 기타 인센티브 등).
- 적합한 Safe Harbour -책임 경감 메커니즘 -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준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4 계산 및 신고 데이터를 준비

- 계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
-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의 출처와 적합성**을 확인.
- 그룹의 규모와 내부 운영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절차를 수립.

5 첫 회계연도에 대한 신고 및 준수

- 신고 목적을 위한 **행정 절차**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 (세무 코드 등록, 신고를 위한 구성 기업 지정, 첨부 서류 및 증빙 등).
- 준수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전문 컨설팅 기관, 기술 솔루션 활용* 등 필요한 **자원**을 준비.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A. QDMTT와 IIR의 주요 내용 비교

제107호 결의안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시행령 초안은 QDMTT와 IIR의 주요 내용을 GloBE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래는 시행령 초안과 QDMTT 및 IIR 원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비교한 내용이다:

	QDMTT	IIR
첫 번째 적용 회계연도	**GMT 규정은 베트남에서 2024 회계연도(FY)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만약 구성 기업 (CE)가 최상위 모회사(UPE)의 2024 회계연도를 채택하며 해당 회계연도가 2023년 12월 내에 시작될 경우, 해당 회계연도는 베트남에서 GMT 적용 목적으로 2024 회계연도로 간주된다.	
I. 적용대상	• 연속된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 동안 연결 매출액이 750 mil 유로(EUR) 이상인 다국적 그룹은 적용 대상 다국적 그룹으로 간주된다. • 시행령 초안은 GloBE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 매출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설립된 지 4년 미만의 다국적 그룹, 회계 기간이 12개월과 다른 다국적 그룹, 분할·합병 이후의 다국적 그룹 등.	
	QDMTT는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MNE)의 베트남에 위치한 법인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구성 기업(CE) • 합작 투자(Joint Venture) 및 합작 투자의 자회사("JV 및 JV 자회사") • 고정 사업장**("PE")**	IIR은 본사가 베트남에 위치한 적용 대상 MNE의 해외 법인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CE • JV 및 JV 자회사 • PE • 투자 법인 또는 보험 투자 법인
II. 재정 회계 기준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함 • 회계연도(FY)는 UPE의 FY를 따름 • 계산 통화는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이며, 환율 변환 원칙은 UPE의 회계 기준을 적용함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회계 기준 – 베트남 회계 기준(VAS)을 기반으로 하고, **중요한 경쟁 왜곡(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을 조정**해야 함. • **중요한 경쟁 왜곡**은 특정 원칙이나 절차의 적용으로 인해 IFRS의 해당 원칙 또는 절차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FY 동안 총 변동 금액이 75 mil EUR를 초과할 경우 존재한다고 간주됨.

III. Top-up Tax 산정 및 부과 원칙	• QDMTT에 따른 Top-up tax는 (I)에서 언급된 법인에 직접 부과되며, **소유 지분(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를 포함함)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총 GloBE 소득에 적용된다.
	• MNE는 베트남 내 CE 간 QDMTT에 따른 납부할 Top-up tax를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나, 배분된 세액은 QDMTT 추가 법인세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IIR에 따른 Top-up tax는 베트남 내 모회사에 부과되며, (I)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유 지분에 할당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최상위 모회사("UPE")
		  ○ 부분 소유 모회사("POPE")
		  ○ 중간 모회사("IPE")
		• IIR은 소유 구조에서 *"상위에서 하위로(top-down approach)"*의 방식으로 징수된다.
		• 각 구성 기업(CE)의 Top-up tax는 GloBE 소득 비율에 따라 할당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B. 베트남 QDMTT의 구체적 규정

QDMTT 규정은 독특하고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OECD의 GloBE 원칙에 따른 일관성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록 시행령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OECD의 행정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의 QDMTT가 QDMTT Safe Harbour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국적 기업 그룹은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IIR을 신고할 때 베트남에서 추가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QDMTT 적용 범위 제외 대상

- 거주 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성 단위 및 고정 사업장 (Stateless CE 및 Stateless PE)
- 투자 단위 또는 보험 투자 단위

QDMTT에서 적용되지 않는 조정 사항

GMT 기준에 따라 소득 또는 손실 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 기준 미달 반환 가능한 소득세(Disqualified Refundable Imputation Tax)를 비용으로 사전 계상한 경우
- GMT 재조정(GloBE Reorganization)에 따른 자산 및 부채 처분
- 소득으로 처리되는 Qualified Refundable Income Tax Credit **(QRTC)** 및 Mark-to-Market Transfer Tax Credit **(MTTC)**
- 한 국가 내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총 자산 이익(Aggregate Asset Gain)**
- 동일 국가 내 거주하는 구성 기업 간 회계 통합적용((Tax consolidation)에 대한 선택권

조정된 적용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QRTC 및 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으로, 현재 세금 비용에서 차감된 것으로 기록된 금액
-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과세 제도에 따라 베트남 내 구성 기업(CE)에 할당된 CE 소유자의 포함 세액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PE)에 할당된 주요 법인의 포함 세액
- 하이브리드 엔티티(hybrid entity)에 할당된 소유자의 세액
- 배당 이익을 가진 CE에 할당된 직접 소유자의 세액

초기 투자 단계에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한 QDMTT 면제

- **적용 조건:**
  - 다국적 기업(MNE)은 6개 이하의 관할권에 구성 단위(CE)를 보유.
  - 참조 관할권(Reference Jurisdiction)을 제외한 다른 모든 관할권에 위치한 모든 구성 기업의 유형 자산 총 장부가치가 50 mil EUR를 초과하지 않다. 유형 자산의 장부 가치는 FS에 기록된 유형 자산의 초반과 말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감가상각, 누적 배분,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실을 차감한 후의 값이다.
- **참조 관할권(Reference Jurisdiction)**는 GMT 적용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에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CE의 유형 자산 총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 **적용 기간:** 다국적 기업 그룹이 GloBE 규정 적용 범위에 처음 포함되는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C. 베트남 IIR의 구체적 규정

IIR Top-up Tax 부과 원칙

상위에서 하위로의 적근 방식 (top-down approach)

Top-up tax는 소유권 체계 내에서 상위에 위치한 모회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징수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UPE(최상위 모회사):** 저세금 구성 기업(Low-Taxed CE – "LTCE")에서 할당된 상향 세금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IPE(내부 모회사):** 저세금 구성 기업에서 할당된 Top-up tax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단, UPE가 적격 IIR을 적용한 경우 또는 지배 지분을 가진 다른 IPE가 적격 IIR을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다.

"소유권 분할 "(split-ownership) 원칙

- 위의 top-down approach에도 불구하고, **부분 소유 모회사("POPE")**는 UPE가 적격 IIR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LTCE의 top-up tax에서 할당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POPE는 제107호 결의에 따라 다국적 그룹 외의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모회사를 의미한다.
- 만약 POPE가 다른 POPE에 의해 100% 소유되며, 그 또한 적격 IIR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권 체계 내 상위에 위치한 POPE가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Top-up tax 배분

❶ **모회사의 할당 가능한 Top-up tax =**
저세금 구성 기업(LTCE)의 Top-up tax **(x) 모회사의 배분율**

❷ **모회사의 배분율** = LTCE의 GloBE 소득 (-)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소유 지분에 귀속되는 해당 소득 금액 / LTCE의 GloBE 소득

IIR 상계 메커니즘

LTCE의 top-up tax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모든 모회사는, 당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하위에 있는 모회사**들이 **이미 배분하고 징수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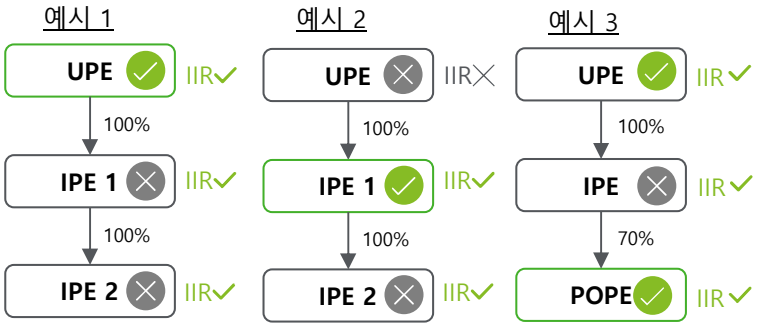

✗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할 필요 없음.*

✓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

IIR✗ *적격 IIR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IIR✓ *적격 IIR을 적용하는 국가*

예시 1:
- UPE는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top-down approach에 따라, 내부 모회사 ("IPE") 1과 IPE 2는 해당 국가가 적격 IIR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top-up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시 2:
- UPE 국가가 적격 IIR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IPE는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Top-down approach에 따라, IPE 1은 소유권 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모회사(즉, IPE 2에 대한 지배 지분을 가진 모회사)이다. 따라서 IPE 2는 IPE 2 국가가 적격 IIR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top-up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시 3:
- "소유권 분할 규칙(split-ownership rule)"에 따라, POPE는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해야 한다.
- UPE도 IIR에 따라 top-up tax를 납부할 수 있지만, POPE가 납부한 top-up tax 금액은 UPE가 부과한 top-up tax 금액과 상계된다.

QDMTT를 적용한 책임 면제 (QDMTT Safe Harbour)

다국적 그룹의 IIR에 의한 top-up tax는 해당 국가에서 0(제로)으로 간주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해당 국가의 QDMTT가 세금 기초 침식 및 이익 이전 방지에 관한 포괄적 틀(Inclusive Framework)에서 발표한 ***QDMTT Safe Harbour***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다국적 그룹이 해당 국가에서 QDMTT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이 해당 국가 내 CE에 대해 QDMTT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witch-off rule").***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D. 실효세율 산정

I.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 "ETR") 산정 공식

$$\text{한 국가의 ETR} = \frac{\text{A}}{\text{B}}$$

A: 해당 국가에 있는 구성 기업(CE)의 회계연도 동안 조정된 총 법인세 적용 범위 세금.

B: **해당 국가의 회계연도 동안 GloBE 세금 규정에 따른 순소득**

실효세율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국가 내 다른 구성 기업과 통합하지 않음):
- 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 *(JV 및 JV Subsidiaries)*
- UPE가 소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해당 회사가 소유한 구성 기업 *(MOCE 및 Minority-owned Subgroup)*
- 투자 실체 또는 보험 투자 실체 *(Investment Entities 또는 Insurance Investment Entities)*
- 거주지가 불분명한 구성 기업 *(Stateless CE)*

II. GloBE 소득 또는 손실의 산정

출발점: 해당 구성 기업(CE)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순소득 또는 손실**로, 이는 UPE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룹 내부 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통합 **조정 이전**의 금액이다. 이후, 재무제표상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배분 및 조정되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을 산정한다.

(1) CE간 소득 배분.

경우	배분방식
본점과 고정사업장(PE) 간	• 고정사업장(PE)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고정사업장의 개별 재무제표에 인식되며,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UPE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회계 기준에 따라 독립된 실체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 PE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본점의 소득 또는 손실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정사업장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을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간 단위	• 중간 단위의 순소득 또는 손실은 순차적으로 다국적 그룹에 속하지 않은 소유자, 해당 단위의 PE, 그룹 내 소유자 또는 해당 단위 자체에 배분된다.

(2) GloBE 소득 또는 손실의 산정

주요 의무적 조정사항
- 순 세금 비용
- 제외된 배당금
- 제외된 자본 이익 또는 손실
- 포함된 재평가 방법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
- 자산 및 부채 처분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GloBE 재조직)
- 비대칭 외환 이익 또는 손실
- 정책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 및 및 회계 원칙 변경
- 누적 연금 비용연금

기타 의무적 조정사항
- 시장 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조정
- QRTC 및 MTTC
- 그룹 내 금융 거래에 대한 특별 규정
- 보험회사는 정책 보유자 세금에 대해 조정
- 추가/제한된 1계층 자본 배분 공제

선택에 따른 조정
- 부채 탕감과 관련된 소득 제외
- 주식 기반 급여 지급에 따른 비용 (5년 선택)
- 공정 가치 또는 가치 감소에 따라 회계 처리된 자산 및 부채 (5년 선택)
- 유형자산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 배분 (연간 선택)
- 동일 국가 내 거주하는 CE 간의 통합 회계 처리 (5년 선택)

다음과 같은 소득 제외:
- 국제 운송 (화물 및 승객 운송, 선박 임대 등);
- 적격 국제 운송 보조 소득 (컨테이너 임대, 보수 서비스, 화물 처리 등).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 실효세율 산정 (계속)

III.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adjusted covered taxes) 의 산정

Adjusted covered taxe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구성 기업(CE)의 소득 또는 이익, 또는 해당 CE가 소유권을 가진 다른 CE의 소득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기록된 세금;
- ✓ 법인세(CIT)와 유사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진 세금;
- ✓ 분배된 이익, 간주 이익 분배, 그리고 비영업 활동 비용에 대해 적격 소득 분배 세제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 ✓ 보유 이익 및 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소득 및 자본 구성 요소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포함한다.

그 후, Adjusted covered taxes 는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배분 및 조정된다.

(1) 적용 범위 세금의 배분

경우	배분방식
PE	고정사업장(PE)의 GloBE 소득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구성 기업(CE)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PE에 배분된다.
소득세 비과세 기업 (Tax transparent entity)	소득세 비과세 기업의 GloBE 소득 또는 손실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배분된 세금은 해당 소유자에게 배분된다.
CFC 세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소유자를 보유한 구성 기업(CE)	통제 외국법인(CFC)의 소득과 관련하여 구성 기업(CE)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CE에 배분된다.
하이브리드 기업 (Hybrid entity)	하이브리드 기업의 소득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세금은 해당 하이브리드 기업에 배분된다
분배된 이익	구성 기업(CE)의 직접 소유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배당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배당을 지급한 해당 CE에 배분된다.

(2) 적용 범위 세금의 조정

추가 조정

- 비용으로 계상된 적용 범위 세금 금액;
- 사용된 GloBE 손실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
- QRTC 및 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
- 이전 회계연도에서 적용 범위 세금에서 제외된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된 적용 범위 세금 금액.

감소 조정

- GloBE 소득 또는 손실 산정에서 제외된 소득과 관련된 당기 세금 비용 금액;
- Non-QRTC 및 Non-MTTC와 관련된 공제 또는 환급 금액 중 당기 세금 비용의 감소로 기록되지 않은 금액;
- QRTC 및 MTTC를 제외하고, 당기 세금 비용 조정으로 처리되지 않은 적용 범위 세금 환급 또는 공제 금액;
- 불확실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당기 세금 비용 금액;
-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 세금 비용 금액.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D. 실효세율 산정 (계속)

III.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adjusted covered taxes)의 산정(계속)

(3) 일시적 차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정(이연법인세 - Deferred Tax)

- 이연법인세 비용은 CE 의 재무제표상 수익 또는 손실에 인식된다.
- 적용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 비용은 15%로 재조정해야 한다("재조정 규칙 - ***Recast rule***).
- 이연법인세 자산이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로 인해 발생하며 15% 미만의 세율로 기록된 경우, **15%로 재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총 이연법인세 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 계산에서 **제외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
- **허용되지 않은 미리 설정된 항목**과 **아직 반영되지 않은 미리 설정된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
- 이연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가치 산정 방식 조정 또는 회계 인식 조정의 결과;
- 세율 변경으로 인해 재계산된 이연법인세 비용;
- 세금 감면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비용.

총 이연법인세 조정

- 회계연도 중 **지급된** 허용되지 않은 발생액 및 아직 반영되지 않은 발생액을 더한다.
- 전 회계연도에 결정되고 현재 회계연도에 **납부된** 회수된 이연법인세를 더한다.
-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당해 연도 손실에 귀속된 이연법인세 자산 금액만큼 차감한다.

(4) 전환 기간 동안 이연법인세 처리

전환 연도(적용 대상 다국적 그룹의 첫 번째 회계연도) 동안 구성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는 전환 연도 및 이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 산정에 포함된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원칙:

-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는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손실을 포함한다.
- **이연법인세 자산** 및 **이연법인세 부채**가 15%를 초과하는 세율로 인식된 경우, 해당 항목은 15%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손실로 인해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이 15% 미만의 세율로 인식된 경우, 15%로 재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

(5) 신고 후 조정 및 세율 변경

1. 이전 회계연도의 QDMTT/IIR 신고 후 발생한 조정
2. 적용 세율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이연법인세 비용(*)
3.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당기 세금 비용(**)

원칙:

- 적용 범위 세금을 **증가시키**는 조정: **당기**에 조정한다.
- 적용 범위 세금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 매년 선택적으로 **당기에** 조정한다.
- 적용 범위 세금을 **감소시키는** 조정(**금액이 중요한 경우**) (*): **전기**의 실효세율(ETR)과 추가 세금을 재계산하며, 발생한 추가 세금은 당기에 납부한다.

(*) 15% 미만의 초기 세율에서 세율이 인상되거나, 세율이 1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
(**) 구성 기업(CE)당 미리 설정된 금액이 EUR 1 million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 중요성 기준은 관할 지역당 100만 유로로 설정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E. Top-up Tax 산정

I. Top-up Tax 산정공식

Top-up Tax = [**Top-up Tax Percentage** × **Excess Profits**] + **Additional Current Top-up Tax**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

(*) QDMTT 산정 공식에 적용되지 않음

Excess Profit = Net GloBE Income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II. 실질기반 소득공제액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1) 급여 관련 공제 항목 - Payroll Eligible Costs

포함 사항: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임금,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비용(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 연금 기여금, 주식 기반 보상에 따른 비용 포함)
-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 소득세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

제외 사항:

- 유형자산의 장부상 잔존가치에 **자본화되는 적격 비용**;
- **국제 운송 소득과 적격 국제 운송 보조 소득**에 귀속되는 배분된 비용.

(2) 유형 자산 관련 공제 항목- Eligible Tangible Assets

계산 기준: 적격 유형자산의 연초와 연말 장부가치의 평균

1. 장부가치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또는 상각누계액, 가치손실
2. 장부가치는 그룹 내 회사 간 거래와 관련된 구매 회계 조정 및 제거 **조정을 반영한 이후**의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포함 사항:

- 자산, 공장 및 장비;
- 천연자원;
- 임차인의 유형 고정자산 사용 권리;
- 유형자산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부동산 사용 또는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

제외 사항:

- 판매, 임대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된 자산;
- 국제 운송 소득과 적격 국제 운송 부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
- 재평가 모형 적용으로 인해 증가된 자산 가치와 감가상각 가치.

III. 당해 연도에 조정된 Top-up tax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금액을 포함한다:

- 이전 회계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 세금을 **재계산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에 특정 국가에서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순소득이 없고**,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이 **0보다 작으며, 예상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보다 낮은 경우**.

(예상 조정된 적용 범위 세금 = GloBE 세금 기준에 따른 소득 또는 손실 × 15%)

(Expected adjusted covered taxes = GloBE income or loss x 15%)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F. 세금 신고, 납부 및 행정 관리

I. 세금 등록 및 신고

신고 CE 지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 다국적 기업 그룹(MNE)이 베트남 내에 두 개 이상의 구성 기업(CE)을 보유한 경우, 최상위 모회사(UPE) 또는 베트남 내 CE는 신고 책임을 맡을 CE를 지정하여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지정은 각 **합작 투자(JV)**, **주요 운영 구성 기업(MOCE)**, **소수 지분 하위 그룹(Minority-owned Subgroup)**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통지가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신고 책임자를 지정한다:**
  - ✓ **QDMTT:**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FS)에서 총 자산 가치가 가장 큰 CE
  - ✓ **IIR:** 베트남 내 최상위 모회사(UPE), 부분 소유 모회사(POPE), 또는 중간 모회사(IPE)

세금 등록: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신고 CE는 세무 등록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신고 CE가
-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신고 CE는 기존에 부여된 세무 코드를 계속 사용하며, 이전 신고 CE의 세무 의무를 승계한다.

적용 대상 CE 목록에 대한 통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신고 CE는 적용 대상 CE 목록에 대한 통지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적용 대상 CE 목록에 변경이 있는 경우, GloBE 정보 신고서 및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제출 기한 내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세금 신고:

- **QDMTT:**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IIR:**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첫 해는 18개월 이내)***

세금 신고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QDMTT**	**IIR**
• QDMTT/IIR GloBE 정보 신고서	✓	✓
•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	✓
• 재무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변동에 대한 설명	✓	✓
• UPE가 준비한 GloBE 정보 신고서(*)	✓	
•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각 CE의 보고 패키지	✓	✓
• UPE의 연결 재무제표		✓

(*) 다음 경우에는 GloBE 정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MNE가 어느 관할권에서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 *이 신고서가 UPE 또는 베트남과 유효한 상호 협정(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체결된 관할권에 위치한 다른 CE에 의해 제출된 경우. 이 경우, 신고 CE는 이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과 해당 법인이 위치한 관할권을 세무 당국에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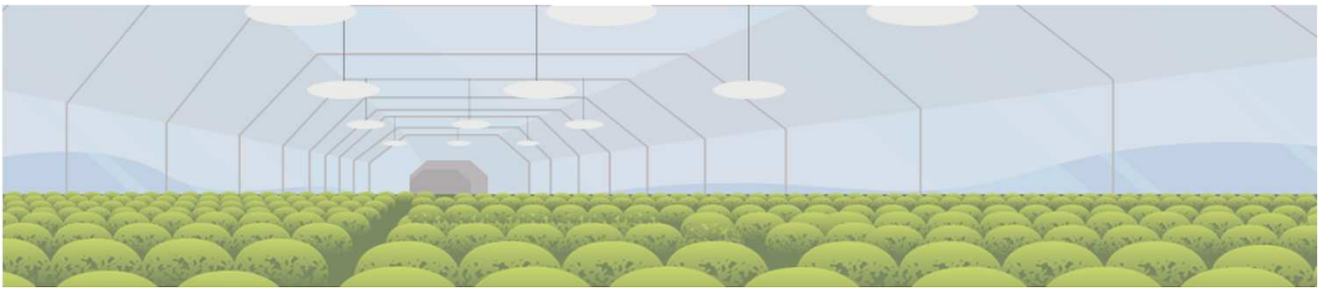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F. 세금 신고, 납부 및 행정 관리 (계속)

II. 세금 신고 및 납부 통화

- QDMTT/IIR 정보 신고서 및 재무 회계 기준 차이로 인한 변동 설명: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를 사용한다.
- 추가 법인세(CIT) 신고서 및 세금 납부:
  - ✓ 베트남 동(Vietnamese dong)을 사용.
  - ✓ QDMTT/IIR 정보 신고서에서 Top-up tax 납부 의무가 UPE의 연결 재무제표 준비에 사용된 통화(베트남 동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경우: 해당 외화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고하거나, 세금 의무를 결정한 연도의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III. 환율

GMT기준에 따른 매출, 소득 기준 및 기타 관련 금액 기준의 환산 목적:

-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통화가 베트남 동인 경우: 베트남 국립은행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중앙 환율 또는 평균 교차 계산 환율을 사용한다.
-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통화가 외화인 경우: 유럽 중앙은행(ECB)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 ECB가 UPE의 연결 재무제표에 사용된 통화에 대한 환율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통화의 관할권 내 국립은행(State Bank)이 공표한, 매출 또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IV. 전환 기간 동안의 벌금 면제

전환 기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며,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포함되지 않음) 동안, 다음과 같은 세무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세금 등록 지연, 신고 CE 지정 통지 및 추가 세금 납부가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지연된 경우
- 세금 등록 변경 통지가 규정된 기한 이후 이루어졌으나 세금 등록 증명서 또는 세금 코드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세금 등록 변경 통지가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세금 등록 증명서 또는 세금 코드가 변경된 경우
- 세금 신고 서류에서 허위 신고 또는 불완전한 신고가 있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0일까지 지연된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되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세금 신고 서류 제출이 규정된 기한 이후 91일 이상 지연되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으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의 세무 감사/조사 결정 통지 이전 또는 세금 신고 지연에 대한 기록 작성 이전에 부족한 세금과 지연 납부 이자를 국가 예산에 완납한 경우
- 과세 근거를 잘못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부족분이 발생했으나, 경제 거래가 회계 장부, 청구서 및 법적 문서에 완전하고 합법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납세자가 유관 기관의 행정 위반 제재 결정 이전에 부족한 세금과 지연 납부 이자를 국가 예산에 자발적으로 완납한 경우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84 934 456 850
kyungryu@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4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

© 2024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